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39
----------	-------

발의연월일 : 2026. 1. 19.

발 의 자 : 김희정 · 박성민 · 김은혜
박준태 · 조은희 · 이종배
김대식 · 김승수 · 김도읍
배준영 · 김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항 및 제4항을</u> 준용한다.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u>제10조제3항</u>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⑦ (생략)	<u>항까지를</u>-----.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10조제4항</u>-----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